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한시정원, 사회복지직 증원, 소득세 독립세 전환, 지적재조사 보강 등이 포함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변경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 : 591명 → 608(17명 증가)
- 집행기관의 정원 : 579명 → 596명(17명 증가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현황(안 별표3)

구 분	합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기 준	591	286	12	133	24	136
조 정	608	303	12	133	24	136
증/감	17	17	-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15년 예산 반영예정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4. 4. 18 ~ 5. 8(20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바. 비용추계서 : 별첨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91명”을 “608명”으로 하고 제1호 중 “579명”을 “596명”으로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① 집행기관의 정원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시정원 9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집행기관의 정원중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1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			과			
총 계	608	608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85	585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5	10	2	4	1	8
6급 이하	555	555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7급상당 이하	1	1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591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79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08명</u> ---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9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~ 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~ ⑤ (생략)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증가(591명 → 608명)

나. 관련조문 : 조례 제2조 및 별표 3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직 9급 3호봉 신규직원 17명 증가

나. 추계 결과

- 비용증가 : 442,000,000(26,000,000원×17명)/연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자체수입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최찬웅
연락처	(033) 330 -2210

